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45
------------	--------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하위번호 정비(안 제13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의: 해당 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10. 10. ~ 10. 30.(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25. 11.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p> <p>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p> <p>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p>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13조(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이승수 (☎ 3153-9512)